

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진흥 규정

전부 개정 2022. 1. 20. 규칙 제15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연구비와 학술연구진흥금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비”란 우리 대학 교직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학술연구진흥금”이란 우리 대학 교원이 수행하는 학술연구의 직무에 필요한 경비로, 연구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 경비를 말한다.
3. “참여연구원”이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연구년”이란 전임교원이 「학칙」 제6조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

② 총장은 다음 학년도의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계획을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기관) 산학협력단장은 제3조와 관련한 총장의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책무 수행을 보좌하며,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장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목적)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년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속시설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발전기금재단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학술연구진흥에 관련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술연구비

제11조(지원원칙) ① 균형적인 학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원한다.

②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 과제를 선정·지원한다.

제12조(연구과제의 종류)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발전연구과제: 총장이 대학 발전과 부속시설의 중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연구과제

2. 연구년 지원과제: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연구년 지원 신청 시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과제

3. 교육연구원과제: 교육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과제

제13조(재원) ① 연구비는 본교 대학회계 및 발전기금재단의 세출예산 중 연구비 예산과 기타 외부 기탁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연구비의 지급 총액 및 지급대상 인원은 제1항의 재원 범위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신청자격) ① 연구비의 신청자격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② 본교 교직원 이외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연구비 지원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에 필요한 특별한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1. 연구기간의 1/3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연구기간의 1/3 이상 연구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연구 수행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3. 현재 진행 중인 타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제21조에 따라 결과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연구비를 반납한 경우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연구원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신청) ①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연구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급대상자 선정) ①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②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학문계열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기간) 제12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발전연구과제 및 교육연구원과제의 연구기간은 연구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

다.

2. 연구년 지원과제의 연구기간은 ‘청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비 지급) 제12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분할로 지급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비 사용) ①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기자재 및 도서 등)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본교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보고) ① 제12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 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발전연구과제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성격상 보고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결과물(동영상, 작품 등)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 연구기간 종료일 까지 : 연구결과보고서(파일) 제출

나.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최종 연구결과보고서(파일, 제본) 제출

2. 연구년 지원과제는 ‘청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연구원과제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간 종료일 까지 : 중간보고서 제출

나.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②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은 연구 개시한 날부터 1/2일이 경과한 후 게재한 논문 또는 보고서이어야 한다.

③ 총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대학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후 학내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발전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에 반영하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결과물에 대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계획의 변경) ①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주제, 연구기간, 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물 발표·게재·출간 과정에서 연구과제명과 결과물 제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서를 결과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2호의 연구계획 변경은 ‘청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지급정지 및 반환) ①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지급 받았을 때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1조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일과제로 이중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가 연구결과물 제출 전에 의원면직 또는 퇴직할 경우, 퇴직일 전일까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제24조(연구비 반환 면제)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반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5조(연구논문의 표기)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는 연구논문 본문 첫 장 빈칸에 “이 논문은 ○○○○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4장 학술연구진흥금

제26조(지급목적) 본교의 교원이 수행하는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진흥금(이하 “진흥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27조(지급대상) 본교 전임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진흥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각종 학술지나 논문집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2. 저서를 출판하였을 경우

3. 예.체능계의 연구실적을 발표.전시하였을 경우
4. 각종 학술대회와 학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교원 능력 개발 및 학술 교류를 위해 국외 연수를 하는 경우

제28조(지급기준) 진흥금은 당해 연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와 학술연구진흥을 위해 마련한 예산의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세부기준) 진흥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칙 제1599호, 2022.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도 3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된다.